

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

• 어두운 란(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일
신청구분	[]건축주	[]설계자	[]공사감리자	[]공사시공자
허가(신고)번호				
대지위치				

① 건축주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성명	(전화번호 :)	(전화번호 :)
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	
주소		

② 설계자	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
성명	(자격번호 :)	(자격번호 :)	
사무소명	(신고번호 :)	(신고번호 :)	
주소	(전화번호 :)	(전화번호 :)	
설계기간	~	~	
최초도급금액	원	도급계약일자	
정산금액	원	잔여계약금액	원

③ 공사감리자	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
성명	(자격번호 :)	(자격번호 :)	
사무소명	(신고번호 :)	(신고번호 :)	
주소	(전화번호 :)	(전화번호 :)	
감리기간	~	~	
최초도급금액	원	도급계약일자	
정산금액	원	잔여계약금액	원

④ 공사시공자	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
대표자명			
회사명	(면허번호 :)	(면허번호 :)	
주소	(전화번호 :)	(전화번호 :)	
시공기간	~	~	
최초도급금액	원	도급계약일자	
정산금액	원	잔여계약금액	원

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안내			
첨부서류	•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수수료 원
제출하는 곳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 등	처리부서	건축허가부서 등
근거법규			
「건축법」 제16조,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1조	•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. • 건축주는 설계자,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		
유의사항			
「건축법」 제110조 제2호	• 위반사항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.		
작성방법			
1. ① ~ ④ :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○○○ 외 ○인으로 기재하며, "외 ○인"의 현황도 제출합니다.			
2. 설계자,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도급금액, 정산금액은 변경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, 도급계약일자, 잔여계약금액은 변경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			